

가업승계 세제 지원제도

강사 : 이태원 대표세무사
(태원세무법인 대표이사)

2015. 03. 10.

목 차

- I. 주식의 평가
- II.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III. 가업상속공제
- IV. 연부연납
- V.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제외
- VI.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I. 주식의 평가

1. 평가방법

구분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 / 5$
부동산과다법인	$(1\text{주당 순손익가치} \times 2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3) / 5$

1)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순이익을 자본으로 환원한 가치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의미

2) 1주당 순자산가치

해당주식 발행법인이 청산 시에 1주당 잔여재산 분배액을 의미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text{해당법인의 순자산가액} / \text{발행주식총수}$$

3)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는 경우

- ①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 ② 휴 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 ③ 상속세,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청산 중이거나,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I. 주식의 평가

2. 1주당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손익액의 계산

1) 원칙

$$\begin{aligned}
 & (\text{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3 \\
 & + \text{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2 \\
 & + \text{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times 1
 \end{aligned}$$

6

※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각사업연도 순손익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계산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지주회사,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액

(-) 인건비 등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

(-) 기부금, 접대비, 광고선전비,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액

= 각사업연도의 순손익액

2) 예외

그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평균가액

I. 주식의 평가

3.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부채를 차감한 가액 단, 순자산가액이 0이하인 경우 0원으로 한다.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자산합계액} - \text{부채합계액}}{\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4.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을 할증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주식을 2017.12.31.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제외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	할증액
50%이하	평가액 × 20%
50%초과	평가액 × 30%

Ⅱ.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취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

2. 과세특례요건

1) 수증자와 증여자의 범위

(1) 증여자 요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

(2)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인 거주자 1인

2) 증여재산의 범위

기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원 한도)

3) 기업의 승계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Ⅱ.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과세방법

$$\text{증여세 산출세액} = (\text{증여세 과세가액} - 5\text{억원}) \times 10\% \text{ (또는 20\%)}$$

1)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MIN (㉠, ㉡)

㉠ 증여세 과세가액

㉡ 한도 : 100억원 (한도 초과분은 누진세율 적용대상)

2)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

3)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세율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10%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세율) 로 하여 증여세부과

4)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의 배제

Ⅱ. 기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사후관리

1) 증여세 추징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①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정상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추징세액 : 증여 당시 증여세액 + 이자상당액

추징대상금액 :

주식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50%의 정상세율로 계산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 증여자의 사망 시 증여재산의 정산

1) 가업승계 주식 등의 상속재산 가산

가업승계 지분은 증여 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각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를 정할 때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다.

2) 증여세액공제의 한도 적용 배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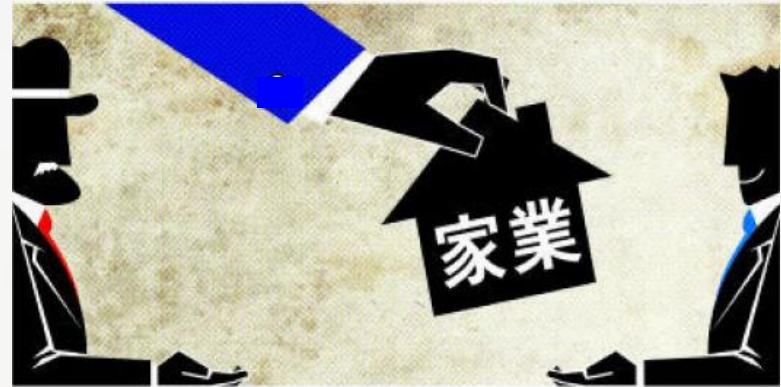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은 사전증여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부연납 특례도 적용 받을 수 있다.**

Ⅲ. 가업상속공제

1. 취지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효율적
전수·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



2.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1) 가업상속의 범위

- ①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② 또한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

Ⅲ. 기업상속공제

2)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기업영위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① 50% 이상의 기간

②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 요건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②,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기업에 종사한 경우

③ 상속인 1명이 해당 기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④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Ⅲ. 가업상속공제

3. 가업상속공제액

1)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 가업상속공제액 = MIN (①,②)

① 가업상속재산가액

② 한도 :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200억원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500억원

2)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Ⅲ. 기업상속공제

4. 사후관리 (기업상속공제가 추징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① 해당 기업용 **자산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② 해당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수의 평균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에 미달**하는 경우

IV. 연부연납

1. 취지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의무의 이행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요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연부연납의 방법

(1) 연부연납의 기간

- ①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2년 거치, 5년 분할납부)
다만,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3년 거치, 12년 분할납부)
- ② 위 ①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

(2)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

매년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 연부연납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V.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제외

※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2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을 2017.12.31.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경우에는 할증평가하지 아니한다.

- ①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 20% 가산
- ② 지분율 50% 초과하는 경우 : 30% 가산



VI.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개요

가업승계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상속받으면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과점주주가 되며, 그에 따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간주취득의 요건

1) 납세의무자 :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법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취득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원인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기타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포함한다.

3) 간주취득의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VI.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3.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text{과세표준액} = \text{해당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총액} \times \frac{\text{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의 수}}{\text{그 법인의 주식·출자의 총수}}$$

4. 세율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 (2%)을 적용

Question & Answer